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을 제고를 위하여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해당 입찰건에 대한 입찰절차의 일시 중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499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한 중소기업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4. . ~ 5.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입찰절차 중지명령의 예외)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

부칙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입찰절차 중지명령의 예외) <신 설></p> <p>1. <신 설></p> <p>2. <신 설></p> <p>3. <신 설></p>	<p>제18조의2(입찰절차 중지명령의 예외)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서 제2조의3 각 호의 경우</p> <p>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p> <p>3. 법 제1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경우</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로과	
연 락 처	(042) 481 - 8919